

8. 農漁村特別稅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14,313號 1994.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1종제2류의 과세물품을 말한다. 다만, 동종동류제1호중 “100만원”은 “200만원”으로 동종동류제4호가목(1) 및 다목중 “200만원”은 “300만원”으로, 동종동류제4호가목(2) 및 나목중 “50만원”은 “75만원”으로 한다.

제4조(비과세)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1항제1호(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3. 지방세법 제107조제3호 및 제7호, 제108조제2호 내지 제4호(광업권을 제외한다), 제11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및 제20호, 동조제2항제8호

제9호 및 제18호, 제110조의4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8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군지역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및 제20호의 법인에 한한다], 동조제2항제8호 및 제19호, 제128조의3제1항(제110조의4제1항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7호 내지 제20호의 법인에 한한다), 동조제2항제1호·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4.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27조·제29조·제29조의2·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64조제1항제9호, 제73조, 제74조, 제11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3.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4.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제28조의6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제9호, 제12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 및 제14호, 제28조의7제1항제5호(연구·개발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10조의2,

제110조의3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 제1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27조의2, 제128조제9항, 제128조의2제2항제3호·제4호·제6호 및 제9호,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6.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감면으로서 내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 특별세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② 특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특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신고·납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과·징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

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분납은 당해 본세의 분납기간이내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다.

1.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이하인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서 수납한 것은 수납한 날부터 5일이내에 납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 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환급) ① 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

·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부과·징수상황의 보고) 시장·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제4조제4항관련)

		적용배율
도시	·전용주거지역	5배
계획	·상업지역·준주거지역	3배
구역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녹지지역	7배
	·미계획지역	4배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7배

□ 제정이유 □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정(1994.3.24, 법률 제4743호)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면제, 10년이상 경영목장 이전시 양도세 50% 경감등 농어민관련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령 제4조제1항).
- 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약등에 의한 관세감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다.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서민주택의 규모와 농가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함(령 제4조제4항 및 제5항).
- 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성·공익사업을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령 제4조제6항).
- 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국고납입절차, 환급 등 농어촌특별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5조 내지 제12조).
〈법제처 제공〉

우리아빠 부실공사 우리엄마 하자민원